

수용재결신청 관련 서류 열람 공고(11차) (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)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1호(2009.05.07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10호(2013.04.0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7호(2016.09.08.), 은평구고시 제2016-94호(2016.11.03.), 은평구고시 제2017-82호(2017.08.03.), 은평구고시 제2020-7호(2020.01.16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은평구고시 제2017-11호(2017.1.26.)로 사업시행인가, 은평구고시 제2019-71호(2019.05.2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은평구고시 제2019-114호(2019.10.10.), 은평구고시 제2019-133호(2020.10.22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 고시된 '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'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3일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

1. 사 업 명 :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사업위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, 89번지 일대
3. 사업시행자 :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진재기)
[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4, 9층]
4. 소유자 및 수용물건 : “붙임 소유자 및 수용물건[수용재결조서(11차)] 참조”
5.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5.10.23. ~ 2025.11.10.까지
6. 열람공고 : 구청 게시판 및 은평구 홈페이지
7. 열람장소 :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재개발팀 (재결신청서 관계 서류)
8. 의견제출처 : 서울시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재개발팀

[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, 4층 (녹번동)] (☎02-351-7462)

9. 기 타 :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
※ 문의처 :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☎02-385-0050, 3156)